

【 6 】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12. 4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운영방법을 일반회계 행정방식에서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직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립 취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수도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함(안 제2조)
- 다.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관리자(1인)로 지정함(안 제4조)
- 라. 양주군의 수도사업을 위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9조)
- 마.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함(안 제14조)
- 사.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제18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양주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양주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1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서 무상 또는 실 공급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급수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부담금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기타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원시자본금은 2001. 6. 30일 개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양주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추진중인 미완성 사업예산과 기타 채권 채무는 2001. 6. 30. 현재로 결산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승계한다.

③이 조례의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第5章 地方公企業

● 地方公企業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69 · 1 · 29	法律第2101號
改正	1980 · 1 · 4	法律第3233號
	1991 · 5 · 31	法律第4371號(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
	1992 · 12 · 8	法律第4517號
	1996 · 12 · 30	法律第5200號
	1999 · 1 · 29	法律第5708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 · 經營하거나, 法人을 設立하여 經營하는 企業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定하여 그 經營을 合理化함으로써 地方自治의 발전과 住民의 福利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80 · 1 · 4)

第2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 · 經營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第3章 및 第4章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이 經營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水道事業(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工業用水道事業
3. 軌道事業(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自動車運送事業
5. 地方道路事業(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6. 下水道事業
7. 住宅事業
8. 土地開發事業
9. 醫療事業

②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經常經費의 5割이상을 經常收入으로 充당할 수 있는 사업을 地方直營企業 · 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第10編 地方制度 第5章 地方公企業 地方公企業法

경영하는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民間人の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住民福利의 增進에 기여할 수 있고, 地域經濟의 活性化나 地域開發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③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을 設置·경영함에 있어서 民間經濟를 萎縮시키거나 崩壞하고 자유로운 經濟秩序를 破壞하거나 環境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1·29]

第3條 (經營의 基本原則) 地方直營企業,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은 恒常 企業의 經濟性과 公共福利를 增大하도록 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全文改正 80·1·4]

第4條 (地方公企業法에 관한 法令등의 制定 및 施行) 地方公企業에 관한 法令 및 條例와 規則 기타 規程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原則에 따라야 한다.

第2章 地方直營企業

第1節 通 則

第5條 (地方直營企業의 設置)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直營企業을 設置·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置·運營의 基本事項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第6條 (地方自治法등의 適用) 地方直營企業에 대하여는 이 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自治法 및 地方財政法 기타 關係法令을 適用한다. <改正 92·12·8>

第2節 組 織

第7條 (管理者)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業務를 管理·執行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마다 管理者를 둔다. 다만,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同質 또는 類似한 事業에 있어서는 2이상의 事業에 걸쳐 醫療事業에 있어서는 病院마다 管理者 1인을 둘 수 있다. <改正 80·1·4, 92·12·8>

② 管理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중 地方直營企業의 經營에 관하여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며, 任期制로 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전문개정 1999. 3. 31 대통령령제1621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의료사업 : 병상수 30개이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2 조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 1 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방직영기업

제 3 조 (관리자의 임기) ① 법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上・下水道事業 地方公企業 轉換 推進 指針

2000. 4. 4

行 政 自 治 部
韓 國 自 治 經 營 協 會

目 次

I. 根 據	
II. 地方公企業 轉換의 必要性	
III. 地方公企業 轉換指針	
1. 기본방침	
2. 轉換대상 사업	
3. 지방공기업 轉換절차	
가. 절차도	
나. 운영	
다. 단계별 세부내용	
IV. 지방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사업운영상의 상이점	
1. 주요내용	
2. 비 교	
V. 行政事項	
[붙임1] ○○시·군 상수도공기업설치조례	
[붙임2] 지방공기업 자산평가요령	

上·下水道事業 地方公企業 轉換 推進指針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

I. 根 據

○ 지방공기업법(§2①)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 6. 하수도사업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①)

- 지방공기업법 적용기준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6. 하수도사업 : 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이하생략)
-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지방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II. 地方公企業 轉換의 必要性

-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
 -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 부담
 - 수익자 부담원리 및 독립채산 기반조성

-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 공기업경영을 통한 자율성·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수요 충족
-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각종 경영정보의 활용 가능

Ⅲ. 地方公企業 轉換指針

1. 기본방침

- 지방공기업법 의무적용 대상사업으로서 기준도달사업은 불가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내 공기업 전환 완료
-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조기 공기업 전환 추진

<기업회계방식의 특징>

-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채택
 - ⇒ 연도별 손익계산, 재산변동 원인파악 가능
- 재무제표작성·활용
 - ⇒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자금운용상황 파악 용이
- 사업운영계획,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구분·운영
 - ⇒ 연도별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운영의 합리성 제고
- 수입금마련지출·선수금제도 등 예산운영의 탄력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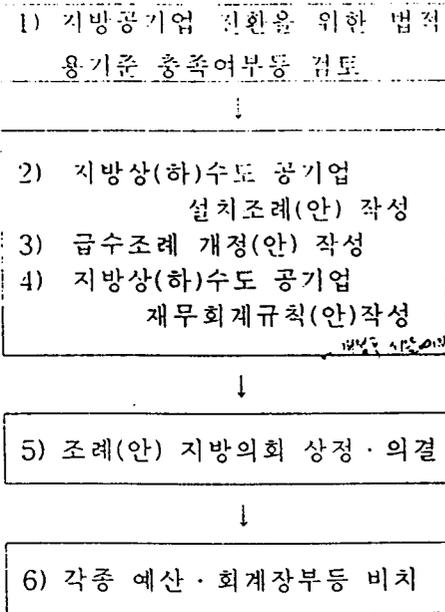
2. 전환대상 사업

- 상수도사업 : 16개단체
- 하수도사업 : 22단체(1천t/11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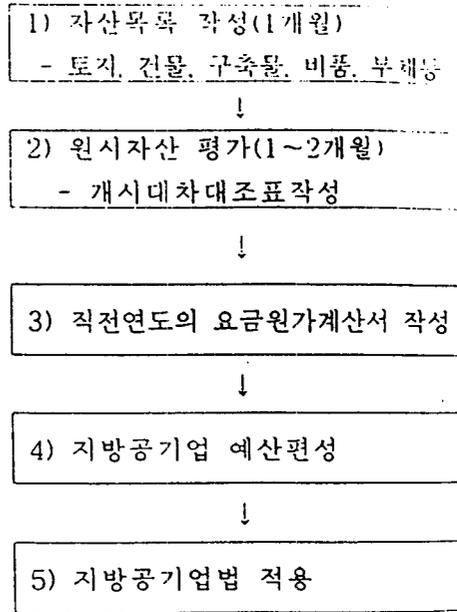
3. 지방공기업 전환절차

가. 절차도

<법·제도적인 면>



<재정 측면>



※ 추진일정예시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 1월
사전 지방의회 협의										
관련자료 작성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										
표준조례, 규칙(안)작성										
자산평가서, 대차대조표, 원가계산서, 요금표등 작성완료										
조례(안), 규칙(안) 제정공포										
법적용 사업운영										

나. 운영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시행
 - 수도정비 기본계획등과 연계하여 계획기간중의 비용 및 수입추정
 - 연차별 요금운영, 부족재원조달 방안등 마련
- 매년 결산결과(총괄원가계산)에 따라 요금 조정
- 기능별원가, 또는 경영분석결과등에 따라 경영개선 추진

다. 단계별 세부내용

< 법·제도적인 사항 >

- 1)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법적용기준 충족여부등 검토
 - 사업규모의 법적용 기준 도달 여부
 - 법적용기준에는 미달하나 공기업 전환시의 장단점 검토등
- 2)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설치조례 제정
 - 조례안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립취지
 - 사업의 범위
 - 수도사업
 - 온탕사업(사업이 있는 경우)
 - 공업용수도사업 등(사업이 있는 경우)
 - 관리자 지정
 - 부시장, 부군수 또는 담당국장
 - 경비구분부담원칙
 - 출자 및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수입금마련 지출 및 잉여금 등의 처분절차 등

○ 부 칙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 설치조례 폐지
- 원시자본금에 관한사항 등

○ 표준조례안 : “붙임 1” 참조

○ 제정절차 : 조례안 작성→입법예고→지방의회상정·의결→공표

3) 급수조례 개정

- 급수조례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변경되는 회관직 및 계정과목등

4) 지방상(하)수도 공기업 재무회계규칙 제정

- 일반회계 재무회계규칙과 별개의 공기업회계규칙 제정
- 행정자치부 준칙('98)을 참고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99)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5) 각종 예산·회계장부등 비치

- 비치시기 : 재무회계규칙 공포와 동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및 지방공기업 재무회계규칙에서 지하고 있는 각종 장표류
 - 시행규칙 : 11종, 지방공기업재무회계규칙 : 54종

< 재정운영 측면>

1) 자산목록 작성

- 기업회계처리의 기초가 되는 자산평가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목록 작성

- 유동자산 : 현금예금, 수용가미수금, 저장품등
 - 가동설비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등
 - 건설중인 자산 : 공기업 전환기준일 까지의 투자금액
 - 유동· 고정부채 : 기채선별 채무액
-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요령(행정자치부훈령) : “붙임 2” 참

2) 원시자산 평가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에 의거하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 지방공기업 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시대차대조표 작성

3) 직전연도의 요금원가계산서 작성

- 공기업전환 첫해의 요금인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년도 요금원가계산서 작성 시 지출비용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원가계산서작성
- 요금인상요인, 요금인상계획등 확정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 예산안 주요내용
 - 사업운영계획
 - 보급·시설확장·생산·급수·인력관리계획 등을 전담부서별 예산편성
 - 예비비 수치지화
 - 예산총칙
 - 예산주요내용 요약, 지방채발행, 차입한도, 잉여금처분, 자산처분계획 등

- 사업 예산
 - 상수도 사업의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세입·세출 계상
 - ┌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수입이자, 타회계부담금, 고정자산처분 이익등
 - └ 원수취수비, 정수비, 배급수, 관리비, 징수및수용가관리비, 감각상각비
- 자본 예산
 - 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본의 증감
관한사항 계상
 - ┌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시설부담금, 타회계보조금 등
 - └ 시설확장 : 개량비, ~~연차자산~~_{기계} 투자 및 기타자산 등
- 자금운용계획
 - 수입과 지출을 현금주의 방식에 의하여 기재
- 절 차 : 관리자가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의회의결

5) 향후 3개년의 비용 및 수입추정

- 정부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 요금을 원가보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향후 3개년간의 수입 비용 추정

6) 연차별 적정요금수준 결정 - 급수조례 개정사항

- 수입비용 추정 결과에 따라 연차별 적정 인상을 결정
- ※ 조례개정사항이므로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 업종간 적정
차등간격의 요율표 작성 → 매년 급수조례 개정 시행

IV. 지방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사업운영상의 상이점

1. 주요내용

가. 법령적용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게 되며
지방공기업 관련법령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
제정법, 일반회계 재무회계규칙등을 적용하게 됨
-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법, 하수도법등을 그대로 적용

나. 관리자 제도

- 공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포괄적
으로 관리자에게 위임
 - 위임 제외대상 : 예·결산(안), 의안등의 지방의회 제출
 - 관리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부시장, 담당국장
 - 조례에 의하여 임기제운영가능

다. 예산제도

-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복식예산)
 - 예산체계
 - 예산총칙
 -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 자금운영계획
- 수입금마련지출 제도 운영가능 - 사업량증가에 따른 수입
당해 업무의 직접비로 집행가능
- 신축성 있는 이월·전용
 - 투자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익년도 이월 : 건설개량 이월
 -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목간 전용, 세항간 전용시는 보고
- 감가상각비등 비현금지출경비도 예산에 계상

라. 회계제도

- 회계관직
 - 관리자
 - 기업출납원
 - 수입원, 지출원, 자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등
- 회계처리
 - 별도의 지정금융기관 계약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적용(발생주의)
 - 출납정리기간이 없음

마. 결 산

- 매사업년도말 기준 장부마감
- 익년 3월이내에 결산서작성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 차기의회의 결산승인
- 익년 3월이내에 결산서작성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바. 자산관리

-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시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지방재정법 §77① 의제처리
 - 건당 2.5억원 이상, 토지는 5천㎡이상
- 원시자산평가 실시후 매5년 마다 자산재평가 → 감가상각
기초로 사용

사. 기 타

- 조례로 정하여 회전기금 운영가능
- 지방공기업 전문직렬 공무원 도입
 - 기업행정직, 수도토목직 : 5~9급
- 원칙적으로 독립채산 유지
- 경비구분부담의 원칙 적용

2. 비 교

구 분	기타특별회계	지방직영기업
○ 법령적용	○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재무회계법 - 단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규정 없는 경우 일반회계관련규정
○ 회계관직	○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출납원, 물품출납원	○ 관리자, 징수관, 기업출납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출납원, 물품출납원
○ 회계장부	○ 징수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현금출납부 ○ 공유재산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물품관리장부 ○ 채권관리부, 채무관리부	○ 수입예산정리부, 지출예산통제부, 자금수입기록부, 자금지출기록부, 총계정원장, 계정별보조원장, 이월예산관리대장, 교부자금관리대장, 합계잔액시산표 ○ 재고자산대장, 유형자산대장 ○ 차입금관리대장
○ 예산편성	○ 세입, 세출	○ 사업예산 -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 자본예산 -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 회계처리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결산	○ 자체결산 → 지방의회승인	○ 자체결산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지방의회 승인 - 매년 재무제표 작성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 - 원가계산 등
○ 경영평가	○ 재정분석	○ 2년1회 경영평가 -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V. 行政事項

- 지방공기업 전환대상단체 공무원 교육 : 2000. 4. 4(화)
- 지방공기업 전환계획 수립 : 2000. 4~5월
 - 불임 대상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시·군·구, 시·도 전환대상사업 확정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계획 취합보고 : 2000. 5.31
- 대상사업별 지방공기업 전환절차 추진 : 2000. 4~12월
 - 기준도달사업 및 지자체의 공기업 전환 희망사업 2000. 31한 전환완료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 현황

단 체 명	단체수	공기업 (99이전전환)	비 공 기 업			비 고 (시설용량 통일)
			소 계	기준충족	기준미달	
계	167	94	73	16	57	
특광역시	7	7				
경 기	31	29	2	2		김포 47,000 양주 33,000
강 원	18	10	8	2	6	영월 19,300 고성 19,900
충 북	12	4	8	2	6	청원 18,900 영동 16,150
충 남	15	7	8	2	6	연기 19,000 군산 18,500
전 북	15	7	8	2	6	고창 42,100 부안 50,900
전 남	22	5	17	2	15	영암 15,730 완도 18,700
경 북	23	10	13	3	10	의성 15,400 칠곡 62,700 울진 15,100
경 남	20	11	9	1	8	거창 20,000
제 주	4	4				

붙임 1

○○시·군 상수도공기업설치조례

2000. 조례 제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위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00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군수)에게 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과 및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
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
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
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충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 출은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 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금액 감채적립금
3.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 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 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가 발행하는 시(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상의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 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 ③ (폐지조례) 00시(군) 상수도 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④ (시행일)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 제정

□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운영방법을 일반회계 행정방식에서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직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립 취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수도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함(안 제2조)
- 다.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관리자(1인)로 지정함(안 제4조)
- 라. 양주군의 수도사업을 위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9조)
- 마.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함(안 제14조)
- 사.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제1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지방공기업전환에 따른 원시자산 평가용역비 및 통합예산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500만원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 지방공기업 전환 지침 및 표준안